전쟁없는 세상 20주년 국제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진단과 모색'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강인화(서울대 국사학과 BK조교수,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23. 11. 18(토). 오후2-6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소속과 구성

- 2020년 6월 '병무청'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설치됨
- 상임위원인 위원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포함 2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총 29인(추천기관별: 국가인권위 5, 법무부 5, 국방부 5, 병무청 5, 국회국방위 4, 대한변협 5)
- 2023년 6월, 13명으로 축소(국가인원위 2, 법무부 2, 국방부 3, 병무청 2, 국회국방위 2, 대한변협 2) 되면서 국방부 추천 비중이 더 늘어남.
- 대체역 심사와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국회국방위의 심사위원 추천 권한을 축소, 삭제하고 병무청이 아닌 별도 기관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재승 외, 2018)과 독립기구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강태경, 2021).

대체역 심사 현황(2020.6.30~2022.12.31)

구분	계	'종교적 신념' 사유			'개인적 신념' 사유		
		소계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소계	무죄 확정자	사실 조사자
인용	2,673	2,660	882	1,778	13	2	11
기각	5	4	0	4	1	0	1
각하	6	2	0	2	4	0	4
철회 등	57	49	7	42	8	0	8
누계	2,741	2,715	889	1,826	26	2	24

자료: 대체역 심사위원회(2023: 19)

대체역 심사 현황(2023.1.1.~2023.7.5.)

구분	계
인용	285
기각	1
각하	1
누계	287

자료: 대체역 심사위원회 내부자료

◉ 대체역 심사업무 절차도

사실조사 심사·의결 접수 및 배정 심사 종료 1. 편입신청 접수 3. 조사 준비 5. 사전회의 7. 심사결과 통보 • 신청요건 확인 • 구비서류 보완 • 사실조사 결과보고 • 결정서 송부 • 사실조사 계획 수립 • 신청인 진술청취 • 징·소집 연기처리 7-1.(인용) 대체역 편입 • 사전심사 결과등록 • 대체복무요원 소집 2. 조사관배정 4. 조사 실시 6. 전원회의 7-2.(기각·각하) 징·소집 • 담당조사관 배정 • 현장·온라인 조사 • 사전심사 결과보고 • 징·소집 연기 해소 • 의무 부과 • 신청인·참고인 조사 • 신청인 진술청취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최종 심사·의결 • 행정심판·소송(불복 시)

자료: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명예회복 필요

- 2020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한국의 징병제도는 다양한 분야와 방식의 대체복무('병역특례', '방위', '공익', '사회복무요원' 등)를 포함하여 방만하게 운영됨.
-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회적 낙인과 강력한 처벌로 일관.
-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운영은 지금까지 낙인과 처벌의 대상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병역거부자의 명예회복에 바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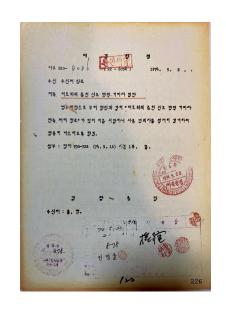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명예회복 필요

"외국에 있어서도 병역의무자를 군인이나 다른 신분으로 정규군 외의 부대나 기관에 배치하여 인력을 활용하는 예는 적지 않았 다. 예를 들면, 종전 징병제하의 미국에서는 양심적 기피자를 징집에 갈음하여 해안 및 지리관측소나 공중보건소 등에 근무시킨 예 가 있었(병무청, 1986)"다. 兵役忌避 85 어호와의증인」신도이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 기피자 단속 처리 협조"(병무청, 1974.5.16.)

"국민 총화 저해 사범인 병역 기피자의 연도별 발생율은 '70년도의 13.2%에서 '73년도에는 0.6%, '74.4.30. 현재에는 0.1%로서 병무청 발족 당시 보다 무려 13.1%가 격감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생략) 일부 몰지각한 병역 의무자가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그 중 종교 상의 교리를 빙자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기피자는 '74.1.1.부터 '74.4.30.까지 발생한 기피자 73명의 63.0%인 46명이며 (생략) 특히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의 행위는 국민이나 다른 신도에게 국민총화 체제를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역 '형평성'의 기준: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 현재의 대체역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적극 실현과 병역거부자의 명예회복을 우선하기 보다, 현역 군복무자들의 '열패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역병의 열악한 처우와 지위, 인권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형평성'을 명분삼아 징벌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역 군복무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현역병과의 '형평성'이 병역거부자 인권과 처우 기준이 되는 상황에 대한 시급한 개선 필요.
-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민간복무로서 '군인'이 아닌 '민간'을 기준으로 해야 함.

중,장기 개선과제: '병무행정'의 '민간이양'

-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0월 1일 병역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방부와 내무부가 함께 다루어 오던 '병무행정' 업무를 국방부(및 병무청)로 일원화하고, 병무행정의 총괄권한을 '내무부장관'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이동시킴.
- 냉전시기 민간영역에 대한 군사영역의 점유는 탈냉전 민주화 이후에도 영향을 미침.
-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 대한 행정업무를 군사영역이 전담하는 '냉전유산'의 해체를 위해 징집 및 소집 실행 이전 단계의 '병무행정'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및 복무 과정 전반이 군사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함.

단기 개선과제: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인권 존중

-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 현재 '공정성'을 이유로 대체역 심사위원회 회의 참여자 명단을 비공개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명시된 신청인의 기피권 행사 보장을 위해서라도 회의에 참석할 위원의 명단 공개가 필요(오동석, 2021).
- '양심' 심사를 이유로 본인과 주변인의 과도한 개인 정보 제출 요구를 지양해야 함.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본인 및 주변인 진술서 제출자 신분증,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서에 더해 진술조서를 요구하는 경우 등)
- 병역거부의 양심을 '종교적 양심'과 '개인적 양심'으로 구분. '종교적' 양심의 경우 신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대체역 심사를 특정 교단의 권한에 의지. '개인적' 양심은 '나약한 기피자'의 모습을 취할 때 진정성을 더욱 의심받음.
-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을 특정 교단의 교리에 대한 충실성으로 이해, 사전의료지시서(수혈거부) 소지 유무, 교단 자체의 징계 유무와 그 이유 등을 확인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함. ('음란물' 시청 여부, 폭력성을 지닌 게임 및 관련 SNS 활동 여부, 성적 '순결성' 준수, 부모의 이혼과 재혼, 비신도와의 연애, 결혼 등)

감사합니다.